

감사보고서

교육부 장관 귀하
 학교법인 추계학원 이사회 귀중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추계학원 (추계예술대학교)의 2018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추계학원 (추계예술대학교)의 재산상황·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내용

구 분	재산·회계감사 지적사항		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건)	비고<지적사항 없는 경우 : 지적사항 없음(표기)>
	건수	금 액		
1.법인 일반업무 관련				지적사항 없음
2.법인 수익사업 관련				지적사항 없음
3.학교 관련				지적사항 없음
4.부속병원 관련				
계				

- 붙임 : 1. 학교법인 추계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별지 제1의1호 서식)
 2. 추계예술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별지 제1의2호 서식)
 3.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

2019년 4월 26일

학교법인 추계학원

감사 김호준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4484 호)

감사 이도신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5576 호)

*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

피감사 기관장

2019년 4월 26일

학교법인 추계학원

이사장 임형빈



피감사 기관장

2019년 4월 26일

추계예술대학교

총장 임상혁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추계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예술대학교의 2019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추계예술대학교의 2019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26일

학교법인 추계학원

감 사

감 사

피감사자(임회인)

직 명 사무처장

성 명

안 경 근

※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 할 것

(교비회계 · 부속병원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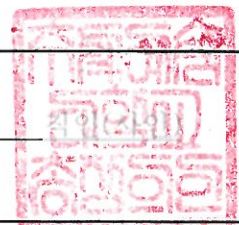
[별지 제1의2호 서식]

추계예술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회계연도 :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지적사항 없음	지적사항 없음
(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	
피감사기관장 추계예술대학교 총장 임 상 혁	



(교비회계 · 부속병원회계)